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23499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장민수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1,085,312,009원의 금전신탁계약을 36,1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7.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서울 양천구 D 일원에 아파트건립을 추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C지역주택조합의 84㎡ 아파트를 신청하기로 하고 분담금 574,000,000원 중 계약금 1차분 3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2020.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를 위하여 업무대행비,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약정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탈퇴하고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4207), 위 법원은 2021. 8. 11.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추진위원회는 무자력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전부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귀속되도록 하였는바, 위 신탁계약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은 별도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추진위원회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인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위탁받은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의 용도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라 할 수 있는 위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지만, 이러한 신탁재산은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되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로서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